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10 발의연월일: 2022. 2. 8.

발 의 자:김영배·송기헌·유정주

김승원 · 김정호 · 서영교

박완주 • 한준호 • 강민정

홍정민 · 고민정 · 박주민

장철민 · 박광온 · 강준현

송갑석 · 김태년 · 신정훈

설 후 · 오영화 · 어기구

윤관석 · 최혜영 · 윤호중

우원식 · 이정문 · 한병도

김민석 • 유영덕 • 신현영

정필모 · 김성환 · 신영대

장경태 · 위성곤 · 서삼석

김원이 · 임호선 · 이원택

이탄희 · 이용선 · 김철민

조오섭 · 송영길 · 전재수

정춘숙 • 박재호 • 김경협

이학영 • 박성준 • 서영석

김승남 의원(5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

참정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며, 현행 방역 규정으로는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 당일 사이에 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에 들어가는 국민의투표권 보장이 불가능함.

또한,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소투표 가 가능한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,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·선상투표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아울러 감염병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6조의3, 제38조, 제40조, 제44조, 제147조 및 제155조).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투표시간 보장) ①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중인 사람이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8조제1항 전단 중 "제5호까지에"를 "제5호의2까지에"로, "서면으로"를 "서면이나 해당 구·시·군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포함한다]으로"를 "포함한다]이나 구·시·군의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4항제6호에"를 "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설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장의, 제4항제6호에"로, "한다"를 "하며,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에 따라

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리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른 거소·선상 투표 신고인명부 확정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.

다만, 제38조의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구·시·군의 장이 직접 또는 당일특급 배송을 활용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5의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

제40조제1항 전단 중 "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 간"을 "다음 각 호의 기간에"로, "선거인명부를"을 "선거인명부 및 거 소·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선거인명부를" 을 "선거인명부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選擧人名簿" 를 "選擧人名簿(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제41조부 터 제43조까지에서 같다)"로 한다.

1. 선거인명부 :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

2.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: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당일 부터 2일간

제44조제1항 중 "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"을 "선거일 전 14일(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0일)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8조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거소·선상투표신고 인명부는 선거일 당일에 확정한다.

제147조제1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 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 교통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,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오후 6시(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8시)에 열고 오후 9시에 닫는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의3(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
	유의 투표시간 보장) ① 「감
	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	법률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
	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
	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
	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
	사람이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
	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.
	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
	한 투표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
	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
	<u>야 한다.</u>
제38조(거소·선상투표신고) ①	제38조(거소・선상투표신고) ① -
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	
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	
서 제4항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</u>	제5호의2까지
<u>에</u> 해당하는 사람(제15조제2항	<u>에</u>
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	
다)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	
구·시·군의 장에게 <u>서면으로</u>	서면이나
신고(이하 "거소투표신고"라 한	해당 구・시・군이 개설 운영하
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	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

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 기우편으로 처리하되, 그 우편 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. <단서 신 설>

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 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 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 의 장에게 서면[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 시밀리(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로 신고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]으로 신고(이하 "선상투표신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편에 의한

<u>.</u>
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
제44조에 따른 거소・선상투표
신고인명부 확정일까지 거소투
표신고를 할 수 있다.
②
<u>포함한다]이나 구·시·</u>
군의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
이지를 통하여

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 다.

### 1. • 2. (생략)

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 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, 제4항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 관이나 시설의 장의, 제4항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(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은 제외한다)은 통・ 리 또는 반의 장의, 제4항제6호 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(제2항제2호에 따른 선 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)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.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「장애인복지 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
<u>제4항제5호</u>
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설에
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
해당 시설의 장의, 제4항제6호
<u>에</u>
-하며,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
는 사람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

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항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송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

항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 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 리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---------.. 다만, 제38조의제4 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구・시・군의장이 직접 또 는 당일특급 배송을 활용해 거 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 소투표신고서를 발송 하여야 한 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- 1. ~ 3. (생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(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)에서 투표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6. (생략)

⑤ ~ ⑧ (생 략)

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·시·군의 장은 해 당 구·시·군이 개설·운영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 야 한다.

<신 설>

<u><</u>신 설>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 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 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 조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6. (현행과 같음)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第40條(名簿閱覽) ① 구・시・군 | 第40條(名簿閱覽) ① ----------다음 각 호의 <u>기간에</u>----------선거인명부 및 거소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•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-----
  - 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거인명부 및 거소·선상투표신 고인 명부를-----
    - 1. 선거인명부 : 선거인명부작 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
    - 2.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: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의 당일부터 2일간

② 選擧權者는 누구든지 <u>選擧</u> 人名簿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 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 한다.

#### ③ (생략)

제44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① 저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,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. <단서 신설>

## ②·③ (생 략)

- 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⑩ *第* (생 략)
  - ① 투표소의 설비, 고령자·장 애인·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, 적절한

②選舉
人名簿(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
를 포함한다. 이하 제41조부터
제43조까지에서 같다)
③ (현행과 같음)
제44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① -
선거일 전 14일(대통령선거의
경우 선거일 전 20일)
<u>다만, 제38조제4</u>
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
거소・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
거일 당일에 확정한다.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⑩
(현행과 같음)

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

第155條(投票時間) ① ~ ⑤ (생략)

<신 설>

\_\_\_\_\_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등 교통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, 적절한 투표소 위치확보 등의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第155條(投票時間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제2항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선거일 오후 6시(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8시)에 열고 오후 9시에 닫는다.